





공유물분할협약서
(A-2)

갑제 19호증 1

사건번호 : 2022가단6918 공유물분할
원 고 : 송동일 외1
피 고 : 강용호 외15

위 사건 토지 공유자들은 제주시 애월읍 소길리 산110번지 토지 분할에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협의하고 동의하여 서명한다.



당사자	협의 내용	서명
피고8 서정실	피고8 서정실 토지 면적 760㎡을, A-2 지역(A-2a, 갑제8호증 표시 위치)에 623㎡를 서정실 단독으로 분할등기한다. 나머지 137㎡는 사도용 지분으로, 공유자 공동 명의로 현재와 같이 소길리 산110번지에 그대로 둔다.	서정실 
피고2 고봉주	피고2 고봉주 토지 면적 331㎡을 A-2 지역(A-2b)에 271㎡를 단독으로 분할 등기한다. 나머지 60㎡는 사도용 지분으로, 공유자 공동 명의로 현재와 같이 소길리 산110번지에 그대로 둔다.	고봉주 
원고2 오충수	원고2 오충수 토지 면적 555㎡을 A-2 지역(A-2c, 갑제5호증2 표시 위치)에 445㎡를 오충수 단독으로 분할 등기한다. 나머지 100㎡는 사도용 지분으로, 공유자 공동 명의로 현재와 같이 소길리 산110번지에 그대로 둔다.	오충수 
원고1 송동일	원고1 송동일 토지 면적 278㎡은 송동일 단독용으로 A-2 지역(A-2d, 갑제5호증2 표시 위치)에 228㎡를 단독으로 분할 등기한다. 나머지 50㎡는 사도용 지분으로, 공유자 공동 명의로 현재와 같이 소길리 산110번지에 그대로 둔다.	송동일 
공동 합의 내용	1. 자기 토지 위치 증명서류가 있는 공유자는 그 위치로 한다. 2. 원고 및 피고 모두 도로 지분 18%로 하고 공유자 단독 지분은 82%로 한다. (계산시 사사오입으로 한다). 3. 기설도로(약 2m 추정)를 1차 경계선 기준으로 하고, 1차 경계선으로 약 1.8m를 인도로 하여 2차 경계선 기준으로 하며, 측량시 도로 지분이 부족하면 인도를 줄이고 남으면 인도를 늘린다. 4. 항공료 및 숙박비 등 공용 비용은 토지 면적 비율로 공동 부담한다. 5. 도로는 분양 당시 도로를 유지하되, C-3 아래 도로는 중간으로 이동한다. 6. 토지 분할에 반대하거나, 조정회의에 불참한 공유자 토지는 현재와 같이 소길리 산110번지에 공동 소유로 그대로 두고 희망자 위주로 토지를 분할 한다. 7. 첨부 : 토지 가분할도.	

공유물분할협약서
(B-1)

갑
제
19
호
증
고

사건번호 : 2022가단6918 공유물분할
원 고 : 송동일 외1
피 고 : 강용호 외15

위 사건 토지 공유자들은 제주시 애월읍 소길리 산110번지 토지 분할에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협의하고 동의하여 서명한다.

당사자	협의 내용	서명
피고5 김진숙	피고5 김진숙 토지 면적 661㎡를 B-1 지역(B-1b)에 542㎡를 단독으로 분할 등기한다. 나머지 119㎡는 사도용 지분으로, 공유자 공동 명의로 현재와 같이 소길리 산110번지에 그대로 둔다.	김진숙 
피고10 이미령	피고10 이미령 토지 면적 1362㎡를 B-1 지역(B-1a)에 634㎡를 단독으로 분할 등기하고, B-2지역(B-2d)에 483㎡ 분할 등기한다. 나머지 245㎡는 사도용 지분으로, 공유자 공동 명의로 현재와 같이 소길리 산110번지에 그대로 둔다.	이미령 
공동 합의 내용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자기 토지 위치 증명서류가 있는 공유자는 그 위치로 한다. 2. 원고 및 피고 모두 도로 지분 18%로 하고 공유자 단독 지분은 82%로 한다. (계산시 사사오입으로 한다). 3. 기설도로(약 2m 추정)를 1차 경계선 기준으로 하고, 1차 경계선으로 약 1.8m를 인도로 하여 2차 경계선 기준으로 하며, 측량시 도로 지분이 부족하면 인도를 줄이고 남으면 인도를 늘린다. 4. 항공료 및 숙박비 등 공용 비용은 토지 면적 비율로 공동 부담한다. 5. 도로는 분양 당시 도로를 유지하되, C-3 아래 도로는 중간으로 이동한다. 6. 토지 분할에 반대하거나, 조정회의에 불참한 공유자 토지는 현재와 같이 소길리 산110번지에 공동 소유로 그대로 두고 희망자 위주로 토지를 분할 한다. 7. 첨부 : 토지 가분할도. 	



공유물분할협의서

(B-2)

사건번호 : 2022가단6918 공유물분할
 원 고 : 송동일 외1
 피 고 : 강용호 외15

갑
 제
 19
 호
 증
 3

위 사건 토지 공유자들은 제주시 애월읍 소길리 산110번지 토지 분할에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협의하고 동의하여 서명한다.


당사자	협의 내용	서명
피고4 김애란	피고4 김애란 토지 면적 433m ² 을 B-2 지역(B-2a)에 355m ² 를 단독으로 분할 등기한다. 나머지 78m ² 는 사도용 지분으로, 공유자 공동 명의로 현재와 같이 소길리 산110번지에 그대로 둔다.	김애란 
피고12 임중현	피고12 임중현 토지 면적 760m ² 을 B-2 지역(B-2b)에 623m ² 를 단독으로 분할 등기한다. 나머지 137m ² 는 사도용 지분으로, 공유자 공동 명의로 현재와 같이 소길리 산110번지에 그대로 둔다.	임중현 
공동 합의 내용	1. 자기 토지 위치 증명서류가 있는 공유자는 그 위치로 한다. 2. 원고 및 피고 모두 도로 지분 18%로 하고 공유자 단독 지분은 82%로 한다. (계산시 사사오입으로 한다). 3. 기설도로(약 2m 추정)를 1차 경계선 기준으로 하고, 1차 경계선으로 약 1.8m를 인도로 하여 2차 경계선 기준으로 하며, 측량시 도로 지분이 부족하면 인도를 줄이고 남으면 인도를 늘린다. 4. 항공료 및 숙박비 등 공용 비용은 토지 면적 비율로 공동 부담한다. 5. 도로는 분양 당시 도로를 유지하되, C-3 아래 도로는 중간으로 이동한다. 6. 토지 분할에 반대하거나, 조정회의에 불참한 공유자 토지는 현재와 같이 소길리 산110번지에 공동 소유로 그대로 두고 희망자 위주로 토지를 분할 한다. 7. 첨부 : 토지 가분할도.	

공유물분할협약서
(C-2)

사건번호 : 2022가단6918 공유물분할
원 고 : 송동일 외1
피 고 : 강용호 외15

갑
제
19
호
증
4

위 사건 토지 공유자들은 제주시 애월읍 소길리 산110번지 토지 분할에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협의하고 동의하여 서명한다.

당사자	협의 내용	서명
피고13 최종인	피고13 최종인 토지 면적 562㎡를 C-2 지역(C-2a)에 461㎡를 단독으로 분할 등기한다. 나머지 101㎡는 사도용 지분으로, 공유자 공동 명의로 현재와 같이 소길리 산110번지에 그대로 둔다.	최종인 
공동 합의 내용	1. 자기 토지 위치 증명서류가 있는 공유자는 그 위치로 한다. 2. 원고 및 피고 모두 도로 지분 18%로 하고 공유자 단독 지분은 82%로 한다. (계산시 사사오입으로 한다). 3. 기설도로(약 2m 추정)를 1차 경계선 기준으로 하고, 1차 경계선으로 약 1.8m를 인도로 하여 2차 경계선 기준으로 하며, 측량시 도로 지분이 부족하면 인도를 줄이고 남으면 인도를 늘린다. 4. 항공료 및 숙박비 등 공용 비용은 토지 면적 비율로 공동 부담한다. 5. 도로는 분양 당시 도로를 유지하되, C-3 아래 도로는 중간으로 이동한다. 6. 토지 분할에 반대하거나, 조정회의에 불참한 공유자 토지는 현재와 같이 소길리 산110번지에 공동 소유로 그대로 두고 희망자 위주로 토지를 분할 한다. 7. 첨부 : 토지 가분할도.	

공유물분할협의서
(C-3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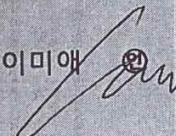
사건번호 : 2022가단6918 공유물분할

원 고 : 송동일 외1

피 고 : 강용호 외15

갑
제
19
호
증
5

위 사건 토지 공유자들은 제주시 애월읍 소길리 산110번지 토지 분할에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협의하고 동의하여 서명한다.

당사자	협의 내용	서명
피고14 이미에	피고14 이미에 토지 면적 661㎡를 C-3 지역(C-3b)에 542㎡를 단독으로 분할 등기한다. 나머지 119㎡는 사도용 지분으로, 공유자 공동 명의로 현재와 같이 소길리 산110번지에 그대로 둔다.	이미에 
공동 합의 내용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자기 토지 위치 증명서류가 있는 공유자는 그 위치로 한다. 2. 원고 및 피고 모두 도로 지분 18%로 하고 공유자 단독 지분은 82%로 한다. (계산시 사사오입으로 한다). 3. 기설도로(약 2m 추정)를 1차 경계선 기준으로 하고, 1차 경계선으로 약 1.8m를 인도로 하여 2차 경계선 기준으로 하며, 측량시 도로 지분이 부족하면 인도를 줄이고 남으면 인도를 늘린다. 4. 항공료 및 숙박비 등 공용 비용은 토지 면적 비율로 공동 부담한다. 5. 도로는 분양 당시 도로를 유지하되, C-3 아래 도로는 중간으로 이동한다. 6. 토지 분할에 반대하거나, 조정회의에 불참한 공유자 토지는 현재와 같이 소길리 산110번지에 공동 소유로 그대로 두고 희망자 위주로 토지를 분할 한다. 7. 첨부 : 토지 가분할도. 	

공유물분할협약서
(A-1)

사건번호 : 2022가단6918 공유물분할
원 고 : 송동일 외1
피 고 : 강용호 외15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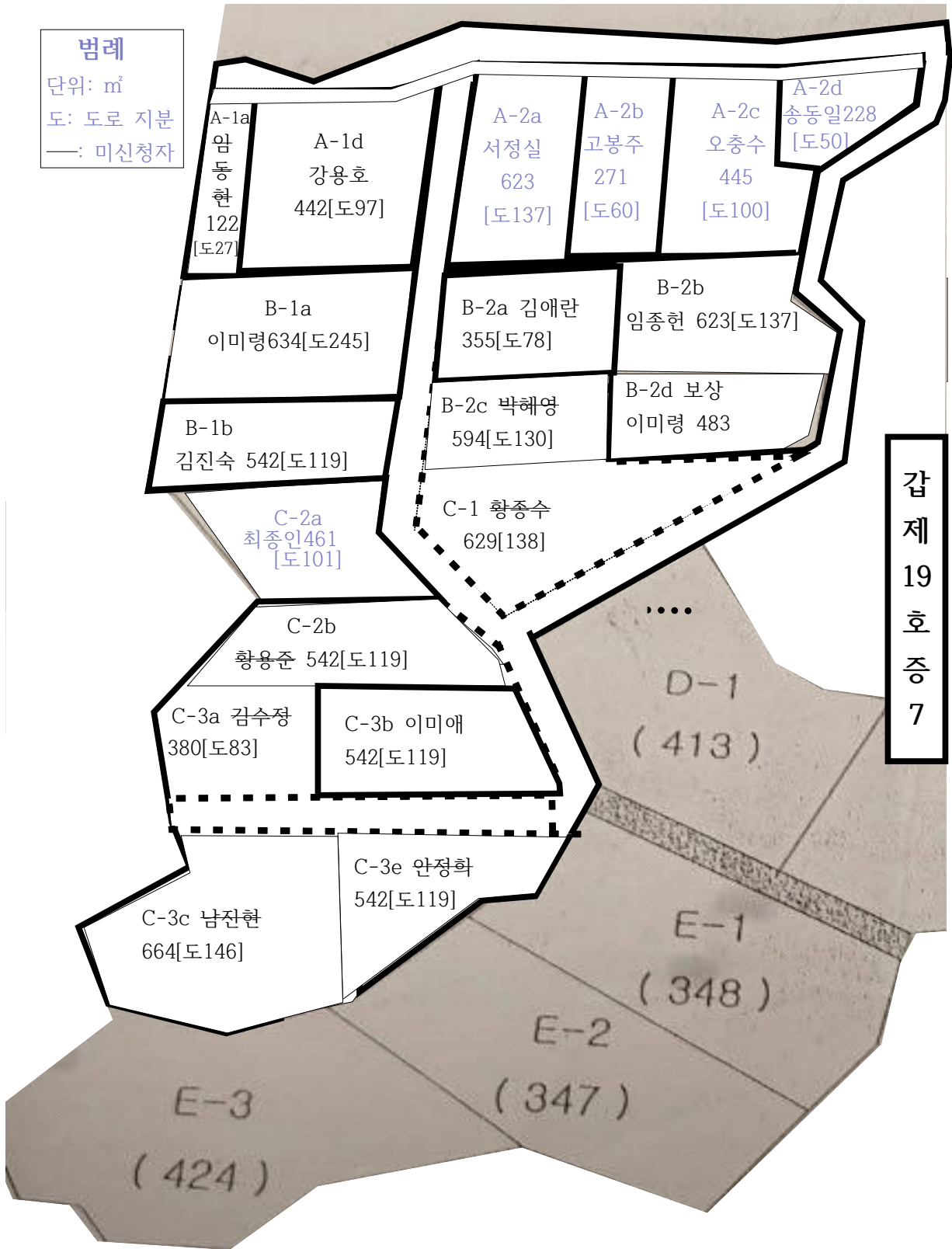
갑
제
19
호
증
6

위 사건 토지 공유자들은 제주시 애월읍 소길리 산110번지 토지 분할에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협의하고 동의하여 서명한다.

당사자	협의 내용	서명
피고1 강용호	피고1 강용호 토지 면적 539㎡를 A-1 지역(A-1d)에 442㎡를 단독으로 분할 등기한다. 나머지 97㎡는 사도용 지분으로, 공유자 공동 명의로 현재와 같이 소길리 산110번지에 그대로 둔다.	강용호
공동 합의 내용	1. 자기 토지 위치 증명서류가 있는 공유자는 그 위치로 한다. 2. 원고 및 피고 모두 도로 지분 18%로 하고 공유자 단독 지분은 82%로 한다. (계산시 사사오입으로 한다). 3. 기설도로(약 2m 추정)를 1차 경계선 기준으로 하고, 1차 경계선으로 약 1.8m를 인도로 하여 2차 경계선 기준으로 하며, 측량시 도로 지분이 부족하면 인도를 줄이고 남으면 인도를 늘린다. 4. 항공료 및 숙박비 등 공용 비용은 토지 면적 비율로 공동 부담한다. 5. 도로는 분양 당시 도로를 유지하되, C-3 아래 도로는 중간으로 이동한다. 6. 토지 분할에 반대하거나, 조정회의에 불참한 공유자 토지는 현재와 같이 소길리 산110번지에 공동 소유로 그대로 두고 희망자 위주로 토지를 분할 한다. 7. 첨부 : 토지 가분할도.	

토지 가분할도

범례
 단위: m²
 도: 도로 지분
 —: 미신청자



갑 제 19 호 증 7